

(미래정책연구실, 2009.04.20)

□ 한국-캐나다 쇠고기 수입 협상 경과

- 2003년 이전까지 캐나다와 한국의 쇠고기 교역은 활발한 수준이었음.
 - 한국: 캐나다는 미국, 호주, 뉴질랜드에 이은 최대 수입국
 - 캐나다: 한국은 수출시장 4위(2002년 기준 50백만 달러 이상)

표 1. 캐나다 쇠고기 수출 추이

단위: 천톤, 백만 달러

구분	한국		일본		홍콩		멕시코		미국		전체	
	수입량	수입액	수입량	수입액	수입량	수입액	수입량	수입액	수입량	수입액	수입량	수입액
1990	1	2.8	4	18.6	0	0.5	1	2.1	85	232.1	94	261.1
1995	4	18.9	12	72.3	1	1.9	3	3.7	189	532.2	222	657.1
2000	21	98.6	28	162.1	2	8.8	53	180.3	318	1,382.1	446	1,877.6
2001	9	28.6	29	171.4	2	7.2	70	271.7	356	1,690.7	490	2,226.1
2002	17	59.8	24	96.1	1	3.0	78	289.7	363	1,628.3	521	2,164.5
2003	6	29.5	9	42.3	1	1.7	29	117.8	253	1,186.4	325	1,442.1
2004	0	0.0	0	18.5	10	38.2	87	353.5	337	1,474.8	455	1,913.8
2005	0	0.0	0	0.0	20	76.4	52	208.3	371	1,546.0	458	1,863.0
2006	0	0.0	3	0.0	16	59.1	42	158.7	295	1,072.8	368	1,334.6
2007	0	0.0	4	24.2	17	53.3	46	157.1	281	838.8	363	1,109.0
2008	0	0.0	5	31.3	18	73.4	47	178.9	295	999.5	393	1,363.9

주: 2003년 이후 한국은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 중단.

자료: 캐나다우육수출협회.

- 수입 중단 이후, 양국은 쇠고기 시장 개방 문제에 관해 다각적 논의
 - 2007.1월 주체네바 캐나다 대사는 공식 서한에서 2003.6월 우리나라 정부의 조치가 ‘동식물 위생 검역에 관한 협정(SPS)’을 위반했다고 주장
 - * 캐나다 쇠고기 전면 금수조치의 법률적·과학적 근거 제시 요구
 - 전문가 기술협의 개최, 장관 면담 등 개최
 - * 2008년 BSE 감염 소 발견 등으로 무산

표 2. 캐나다 쇠고기 수입 관련 협상 경과

일시	주요 내용
2003.5.21	캐나다 내 BSE 발생 으로 쇠고기 등 관련 제품 수입 금지
2007.5.25	캐나다, 국제수역사무국(OIE)의 ‘ 광우병 위험 통제국 ’ 지위 획득
2007.6.1	한국, 캐나다에 추가 가축 위생 설문서 제시
2007.7~8	한국, 캐나다 가축 위생실태 현지조사 실시
2007.11	제1차 한·캐나다 전문가 기술협의 개최
2008.11	한국, 캐나다 현지조사 실시
2008.11.17	제2차 한·캐나다 전문가 기술협의 개최 캐나다에서 15번째 BSE 감염 소 발견, 기술협의 중단
2009.2.20	한국, 국내 전문가 회의 개최, 현지조사 결과 설명
2009.3.20	양국 농식품부 장관 면담
2009.4.9	캐나다, 한국을 WTO에 제소

○ WTO에 제소가 이루어질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침.

- 1단계: 양자협의

*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합의 착수(양국 간 일정에 관한 별도 협의가 없을 경우) ⇒ 60일 동안 논의 진행 가능

- 2단계: 분쟁해결기구(Dispute Settlement Body) 구성

* 양자합의에서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면, 제소국의 요청에 따라 구성 ⇒ 제3자인 전문가 3~5인 참여

* 검토 기간은 3~9개월 소요

- 3단계: 상소

* 패소국이 불복 시 4~5개월 내 상소보고서 채택

* 패소국은 분쟁해결기구의 권고 및 결정 이행계획 보고

※ 2~3단계까지 거칠 경우 통상 2년 정도 기간 소요

□ 주요 논쟁 사항

○ 형평성 및 최혜국대우 문제

- 캐나다는 국제수역사무국(OIE)에서 ‘**통제가능한 광우병 국가**’ 지위를 획득한 점을 들어 형평성 문제 제기

* 2007.5월 획득 및 2008.5월 재확인

* 동일 지위를 획득한 미국산 쇠고기는 2008.6월부터 수입 재개된 상황에서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 금지는 불평등하다는 입장

- WTO의 최혜국 대우 원칙(한 나라가 어떤 외국에 부여하고 있는 가장 유리한 대우를 상대국에도 부여)을 위반했다고 주장
- 월령 조건
 - 캐나다는 미국과 동등한 조건 제시를 요구하고 있으나, **합의를 통해 30개월 미만만을 수출할 수 있다는 입장**
- 「가축전염병예방법」 관련 규정
 - 제32조 제1항의 3(“소해면상뇌증이 발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국가산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” 수입 금지)은 30개월 미만을 수입할 경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
 - 제34조 제3항(“최초로 소해면상뇌증 발생 국가산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을 수입하거나 제32조의2에 따라 중단된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의 수입을 재개하려는 경우 해당 국가의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의 수입과 관련된 위생조건에 대하여 **국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.** <신설 2008.9.11>”)에 대해서 캐나다 측이 문제 제기

□ 관련 여론 동향

- 장태평 (농식품부 장관)
 - “광우병에 대한 국민 감정과 국제적 기준 사이에서 고민이 많다.”
 - “가능하면 양국의 협의를 통해 타결되도록 노력”
 - “그동안 (WTO에) 제소된 사건들을 보면 국제 관계에선 과학적·합리적인 측면만 보기 때문에 소비자와 국민 정서는 감안되지 않는다.”
- 서진교 (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투자정책실장)
 - “WTO에 가면 거의 지는 만큼 우선 개방한 뒤 국민을 설득하는 게 바람직”

○ 박상표 (국민건강을 위한 의사연대 정책국장)

- “미국과 캐나다는 성장호르몬 문제 때문에 EU산 쇠고기를 수입하지 않다가 WTO에서 패소했지만 부담금을 물면서까지 문호를 열지 않고 있다.”
- “캐나다산 목재나 농산물 등에서 무역보복 조치를 취하면서 타협을 찾는 등 강경 대응이 필요”

○ 캐나다 우육수출협회

- “한국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는 사실상 2007년 4월부터 이뤄졌다는 점에 비춰 그때부터 캐나다산 쇠고기는 한국에서 차별을 받은 셈”
- “WTO에 제소하기 전 합의가 된다면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수출할 수도 있다는 입장”

○ Stockwell Day (캐나다 통상부 장관)

- “이번 조치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, 협상을 통한 이견 해소를 희망”
- “이번 조치는 캐나다 쇠고기 생산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고, 한국은 캐나다 쇠고기의 핵심 시장(key markets)임.”

○ Gerry Ritz (캐나다 농식품부 장관)

- “현 정부는 한국 시장접근과 관련하여 캐나다 생산자들을 옹호함.”
- “한국과 공고한 관계를 구축하여 왔지만, 캐나다 생산자가 차별을 받는 것에 대해 언제나 수용불가 입장을 견지하여 왔음.”
- “이번 협상은 캐나다 생산자에 대한 정부 입장을 보여줌과 동시에, 한국 정부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공식적인 기회가 될 것임.”